

화순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등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2. 1. 화순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02. 1. 30

다. 상 정 일 사 : 2002. 1. 30

(제10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기획감사실장 배병신

나. 개정사유

-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의 개정 (2001. 10. 9)으로 총부와 소관이던 감사업무가 기획예산실로 이관됨에 따라 기획예산실이 기획감사실로 명칭변경되는 등 직제가 개편 된 실과의 명칭을 수정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화순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화순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화순군조례.규칙의입법예고및공포등에관한조례, 화순군공보등의발행에관한조례안에 명시된 “기획예산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자구수정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정열)

- 본 개정 조례안등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2001. 10. 9)으로 기획감사실장의 명칭이 기획예산실장으로 변경되었기 바로 잡기 위한 개정조례안임.
- 조례의 내용이 현실과 부합될 수 있도록 당연히 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써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등 개정 절차상의 하자나 상위 관련 법규와의 상충어부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

5. 토론요지

“ 생 략 ”

6. 심사결과

“원안의결”

첨 부 : 화순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등중개정조례안

화순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등중개정조례안

제1조(화순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개정) 화순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및 제12조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제2조(화순군민간투자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의 개정) 화순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제3조(화순군조례·규칙의입법예고및공포등에관한조례의 개정) 화순군조례·규칙의입법예고및공포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제4조(화순군공보등의발행에관한조례의 개정) 화순군공보등의발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제1조관련)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u>기획예산실장</u>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자로 한다.</p> <p>1. (생략)</p> <p>2. (생략)</p> <p>② (생략)</p>	<p>제7조(위원회 구성) ①----- ----- ----- -----<u>기획감사실장</u>-----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p>제12조(회계공무원)①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p> <p>1. (생략)</p> <p>2. 기금출납원 : <u>기획예산실장</u></p> <p>② (생략)</p>	<p>제12조(회계공무원)①----- ----- ----- 1. (현행과 같음) 2. -----: <u>기획감사실장</u> ② (현행과 같음)</p>

신 · 구조문대비표 (제2조관련)

현행	개정안
<p>제2조(구성) ① (생략)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u>기획예산실장</u>이 된다 ③ (생략)</p>	<p>제2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u>기획감사실장</u>이 된다 ③ (현행과 같음)</p>

신 · 구조문대비표 (제3조 관련)

현 행	개 정 안
<p>제3조 (예고기간) 행정절차법 제41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예고기간을 2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추진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u>기획예산실장</u>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p>	<p>제3조 (예고기간) ----- ----- ----- ----- ---<u>기획감사실장</u>----- -----.</p>

신 · 구조문대비표(제4조관련)

현행	개정안
<p>제7조(위원회 구성) ① (생략)</p> <p>② (생략)</p> <p>③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 문화관광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관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p> <p>④ (생략)</p> <p>⑤ (생략)</p>	<p>제7조(위원회 구성) ①(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기획감사실장 ----- -----.</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현행과 같음).</p>